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70호) 공포 알림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70)이 2026. 11. 10.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제출
-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가 보유 중인 마약류를 폐기 처리하는 절차 신설
- 종업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마약류 도난·유출이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 몰수마약류의 폐기 및 처분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절차 명확화
- 자가치료 목적으로 국내 처방받은 마약류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취급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등

2.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26. 11. 10.자 관보, 우리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70호)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관련 협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전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무관	이종규	악무사무관	연가	마약정책과장	전결 2026. 11. 10. 문은희

협조자

시행 마약정책과-7797 (2026. 11. 10.)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05 팩스번호 043-719-2800 / jklee1984@korea.kr / 대국민 공개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